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추천 등 특례 규정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17호)

2024.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3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추천 등 특례 규정 등 (안 제9조의2 신설)	5
※ 참고자료	
1. 동학농민혁명 관련 포상심사 현황	9
2.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운동 여부 자문경과	10
3. 관계부처 의견	13
4. 제22대 국회 동일(유사) 법률안 제출 현황	13
5.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22인

나. 발 의 일 : 2024. 07. 29.

다. 회 부 일 : 2024. 0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현행법 제2조제1호에 정의하고 있으며,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운동 등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

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하고, 발굴에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발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¹⁾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발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개정안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책무 및 시책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정신선양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고손자녀를 말한다.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건의 등 특례 규정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u>제9조의2(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 건의에 관한 특례)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 서훈·표창 추천 및 독립유공자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서훈·표창은 각각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²⁾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친 후 추천할 수 있고, 독립유공자 등록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의 대상이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명예 선양에 기여하고,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 표창 규정」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제7조(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추천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상훈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다만,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³⁾’을 문체부장관에게 서훈·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독립유공 서훈 업무는 「상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존 법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⁴⁾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순국한 자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 정의하면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게 해당되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의 목적 등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상충⁵⁾하고 있음.

3) 개정안은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운동 등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5)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인 전봉준·최시형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논의를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 당시 또한 국권침탈이 현저한 시기로 2차 봉기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독립운동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체제개혁을 위해 봉기한 동학은 반봉건 투쟁도 함께 진행하였기 때문에 반침략적 성격으로만 볼 수 없어 적극적인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2차 봉기를 독립운동으로 인정 시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혁을 부정하고 정부가 국권침탈의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이 다수였음. [‘동학농민혁명 관련 포상심사 현황’(참고1) 및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운동 여부 자문경과’(참고2) 참조]

한편, 현재도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표창 추천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개별법에 특정 대상의 독립유공 서훈을 건의하는 등의 특례 규정을 둔 사례는 파악되지 않으며, 3·1운동 등 다른 독립유공 대상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⁶⁾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관한 독립유공 서훈을 다루는 관련 법률 개정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80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4.7.8., 220146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중병의원 대표발의, 2024.7.29., 2202321) 등 2건의 개정안이 정부위원회 심사 중이며, 각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적용대상자에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임.

참고 1

동학농민혁명 관련 포상심사 현황

○ 포상심사 현황

계	'77년	'95년	'06년	'20년	'21년	'22년	'23년
18명	2명	2명	3명	2명	2명	2명	5명

자료: 국가보훈부

○ 포상심사 결과

연도별	심사대상	심사결과	주요 논의 내용
'77년	손화중	부의안함	○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려움
	김덕명	부의안함	
'95년	윤치문	심사유보	○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학계 입장 정리 후 재논의
	정명제	심사유보	
'06년	최시형	보류	○ 1심 : 일시보류 - 을미의병이 포상되었으므로 동학농민운동도 포상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학술적으로 학계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등 ⇒ 합동심에서 논의하기로 의결 ○ 합동심 : 보류 -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
	전봉준	보류	
	손화중	보류	
'20년	최시형	보류	○ 개인별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 논의 필요
	전봉준	보류	
'21년	최시형	보류	○ '21년 6.9월 동학농민운동 포상 여부 검토를 위한 1.2심 전체 회의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려움
	전봉준	보류	
'22년	최시형	보류	○ 학계의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독립운동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전봉준	보류	
'23년	최시형	보류	○ 학계의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독립운동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전봉준	보류	
	손화중	보류	
	김개남	보류	
	박제역	보류	

자료: 국가보훈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등록 현황

- (현황) '24. 8월말 기준, 참여자 3,847명, 유족 13,413명 등록

구분	'04~'09년	'10~'18년	'19~현재	계
참여자	3,644명	-	203명	3,847명
유족	10,567명	-	2,846명	13,413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참여자 포상신청이 수차례 있었으나, 독립운동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학계의 신중·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그동안 미포상
 - * 포상신청 : 손화중·김덕명('77), 최시형·전봉준·손화중('06), 최시형·전봉준('20), 최시형·전봉준('21), 최시형·전봉준('22), 최시형·전봉준·손화중·김개남·박제억('23)
- ☞ '20년 3월 전봉준·최시형 공적심사에서 학계의견 청취 후 서훈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
- '20.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동학 2차봉기 참여자 서훈 필요성 지적

□ 추진경과

① 학계 전문가 자문실시('20.11.~12월/학계 전문가 6명)

반대·신중 학자 3명 / 찬성 학자 3명 자문 참여

* 학계의 찬성·반대 의견을 균형성 있게 파악하는데 주안점

- **(찬성)** 동학 2차봉기는 일본의 국권침탈에 대한 항일투쟁으로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함
 - 1차봉기는 체제개혁이, 2차봉기는 외세타도가 주된 목표
 - 경복궁 점령, 고종 연금, 궁궐 수비대 무력화, 청일전쟁(1894) 등은 국권침탈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
- **(신중·반대)** 항일투쟁의 성격이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개혁이었으므로 독립운동 인정여부는 심층 연구 필요
 - 2차봉기의 주된 목표가 세도정치의 난맥상 타파라는 견해도 있음
 - 일반적으로 국권침탈은 러일전쟁(1904~1905)과 을사늑약(1905) 전후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
 - 2차봉기는 반일투쟁의 속성을 지니나 국권상실 정도로 보아 독립운동이 아닌 정권타도 운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

7) 자료: 국가보훈부

② 독립운동 관련성 연구 학술회의 개최('21.5.20./한국역사연구회)

찬성 의견 연구자들로 구성

- (국권침탈) 1894년 일본의 조선 파병, 경복궁 점령 등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식민지화의 시발점
- (2차봉기의 성격) 일본군 침략에 반대하여 일어난 항일투쟁으로, 의병,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항일 무장투쟁의 출발점
- (포상)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는 2차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규정, 독립유공자 포상 필요
☞ 반면 종합토론에서는 동학 2차봉기를 근대적 항일운동(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당시 국권침탈의 성격, 그에 대한 인식, 저항의 강도 등을 좀 더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③ 공적심사위원회 논의

찬반 입장 : 반대·신중 의견이 대다수

- 1심 위원 합동회의('21.6.25) : 17명 참석, 반대·신중 15명 / 찬성 2명
* 1·2·3분과 위원 참석
- 2심 회의('21.9.9) : 10명 참석, 반대·신중 8명 / 찬성 2명

○ 반대·신중 의견

- 독립운동은 식민지 상태 또는 준(準)식민지 상태에서 국권을 수호 또는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나 모든 항일운동이 독립운동이 되는 것은 아님
- 세도정치·갑오개혁 등의 상황에서 체제개혁을 목표로 봉기한 동학은 명성황후 시해·단발령 등의 상황에서 항일독립을 표방한 의병과도 성격이 달라 적극적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국권침탈의 시기는 1904~1905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조약 전후로 보는 것이 정설이며, 동학 2차봉기 참여자를 포상할 경우 정부 스스로 국권침탈의 시기를 더욱 앞당기는 결과 초래
- 이는 1894년 조선이 이미 준(準)식민지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후 진행된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혁을 부정하게 됨

○ 찬성 의견

- 동학 2차봉기 직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정권을 무너뜨리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강제 연금하는 등 당시는 국권침탈이 현저한 진행된 시기
- 독립운동에는 국권이 상실된 이후 회복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수호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되며, 동학 2차봉기는 이중 후자에 해당

4] 역사교과서 집필자 자문실시('22.8.16.~22./검정 교과서 집필자 8명 전원)

찬반 입장 : 반대·신중 7명 / 찬성 1명

○ 반대·신중 의견

-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은 ‘제국 열강’의 침략 시도에 대한 저항운동이자 조선 내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개혁 운동으로 기술되어 있음
- 동학 2차봉기 직전 일본군이 일시 경복궁을 점거한 것은 사실이나 조선의 주권까지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었고, 2차봉기는 일본을 등에 업은 ‘개화세력’에 대한 반대운동의 성격이 강함
- 따라서 교과서 집필 내용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동학농민운동 참가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찬성 의견

- 독립운동의 출발점은 한국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전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1905년 러일전쟁 종전 이후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나,
- 동학 2차 봉기는 일본의 보호국화에 대한 저항이고, 2차봉기 지도자들이 일본과의 항전을 대내외에 촉구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의 성격을 일부 지님

참고 3

관계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국가보훈부 (‘24.8.16.)	• 제9조의2 삭제 필요 -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의 독립운동 인정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이해와 판단을 요하는 사안 *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의 독립운동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재 학계는 신중·반대론이 다수 - ‘독립유공의 공적’ 유무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 사안임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훈에 관한 사항을 요청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행정안전부 (‘24.8.21.)	• 제9조의2 삭제 필요 - 서훈은 상훈법 제5조에 따라 추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 독립유공자 서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업무를 총괄하며 해당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법률에서 특정대상에 대해 독립유공 서훈 건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참고 4

제22대 국회 동일(유사) 법률안 제출 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주요내용(조항)	발의일	심사경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463)	○ 순국선열, 애국지사 범위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포함(제4조)	‘24.7.8.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회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321)	○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 정의(제1조의2 신설)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방 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	‘24.7.29.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회부)

참고 5

제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법률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심사경과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
독립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5197)	이정문 (22.4.12.)	순국선열, 애국지사, 범우, 범사에 동학농민혁명2차봉기 참여자 포함	(상임위:정무위) •상정(22.9.20.) •소위(23.3.9.) (23.5.16.) (23.6.20.) (23.7.4.) •임기만료폐기	• 동학농민혁명2차봉기 참여자의 독립운동 인정여부 학계 이견 존재 (국가보훈부) • 국권침탈과 독립운동 개념 명확히 정리 필요(강민국, 이용우의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69)	윤준병 (23.2.22.)	2차봉기 참여자에 대해 문체부장관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서훈 추천 및 수여자 독립유공자 등록 의제	(상임위:문체위) •상정(23.3.29.) •소위(24.7.6.) (24.9.19.) •임기만료폐기	• 서훈 업무는 보훈부 소관(김예지의의원) • 동학농민혁명2차봉기의 일제 국권침탈 시점 여부(배현진의의원) • 동학농민혁명2차봉기 참여자의 독립운동 인정여부 학계 이견 존재 (국가보훈부)